

| 운영규정의 개요           |                         |       |                            |                        |       |     |     |     |     |     |
|--------------------|-------------------------|-------|----------------------------|------------------------|-------|-----|-----|-----|-----|-----|
| 기관명                | 빛채운재가족지원센터              |       | 장기요양기관번호                   | 3-4711000442           |       |     |     |     |     |     |
| 대표자                | 조준문                     |       | 시설장                        | 손인영                    |       |     |     |     |     |     |
| 직장일자               | 2019.07.01              |       | 지장형태                       | 개인                     |       |     |     |     |     |     |
| 시설장원               | 해당없음                    |       | 시설규모                       | 대지 383.1㎡, 건물면적 640.3㎡ |       |     |     |     |     |     |
| 기관연락처              | 054-285-1111            |       | 급여종류                       | 방문요양                   |       |     |     |     |     |     |
| 사업장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75(대도동) |       |                            |                        |       |     |     |     |     |     |
| 주거시설               | 시설내 주거가능                | 교통편   | * 자가용이용시*                  |                        |       |     |     |     |     |     |
|                    |                         |       | 오광정-경산대교 방형으로 포스코대로 -      |                        |       |     |     |     |     |     |
|                    |                         |       | -> 농림서거리 (렉전드아구존 우측으로 끼고 ) |                        |       |     |     |     |     |     |
|                    |                         |       | 우회전-> 50M 직진 우측 도로변        |                        |       |     |     |     |     |     |
|                    |                         |       | *대중교통 이용시*                 |                        |       |     |     |     |     |     |
| 130번, 131번: 경산시장까지 |                         |       |                            |                        |       |     |     |     |     |     |
| 방문인력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보조원 |
|                    | 1명                      | 2명    | -                          | -                      | 46명   | -   | -   | -   | -   | -   |
| 운영목적               |                         |       |                            |                        |       |     |     |     |     |     |

이용자(제거급여 대상자)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편안한 노후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관한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자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용자는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의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합할 경우 가족, 전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가능하다.  
3.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제 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계약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별도의 확인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5. 계약내용변경사항(유효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제계약을 하도록 한다. 다만, 수가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시 시설장은 기관을 이용중인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가 인상에 따른 이유를 안내하도록 한다.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월 한도액 안에서 제거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2. 일반 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다.  
3. 의료급여 이용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40% 감경 대상자는 9%를, 60% 감경 대상자는 6%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5. 그 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별지 1 일 이용료 부담액]  
2025년 등급별 제거급여 월 이용한도액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자치원    |
|----------|-----------|--------------------------|-----------|-----------|-----------|---------|
| 월 한도액(원)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          |           |                          |           |           |           |         |
| 분류번호     |           | 방문요양                     |           |           | 수거        |         |
| 가-1      |           | 30분                      |           |           | 16,940    |         |
| 가-2      |           | 60분                      |           |           | 24,580    |         |
| 가-3      |           | 90분                      |           |           | 33,120    |         |
| 가-4      |           | 120분                     |           |           | 42,160    |         |
| 가-5      |           | 150분                     |           |           | 49,160    |         |
| 가-6      |           | 180분                     |           |           | 55,350    |         |
| 가-7      |           | 210분                     |           |           | 61,670    |         |
| 가-8      |           | 240분                     |           |           | 68,030    |         |
|          |           |                          |           |           |           |         |
| 분류번호     |           | 방문목욕                     |           |           | 수거        |         |
| 나-1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           | 86,480    |         |
| 나-2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           | 77,970    |         |
| 나-3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           | 48,690    |         |

| 분류                  |          | 일반     | 지역전담   |
|---------------------|----------|--------|--------|
| 3시간 이상<br>~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0,650 | -      |
|                     | 장기요양 2등급 | 37,630 | 47,330 |
|                     | 장기요양 3등급 | 34,740 | 43,700 |
|                     | 장기요양 4등급 | 33,160 | 41,700 |
|                     | 장기요양 5등급 | 31,580 | 39,700 |
| 6시간 이상<br>~ 8시간 미만  | 인자치원 등급  | 31,580 | -      |
|                     | 장기요양 1등급 | 54,490 | -      |
|                     | 장기요양 2등급 | 50,470 | 63,490 |
|                     | 장기요양 3등급 | 46,590 | 58,600 |
|                     | 장기요양 4등급 | 45,000 | 56,620 |
| 8시간 이상<br>~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43,400 | 54,590 |
|                     | 인자치원 등급  | 43,400 | -      |
|                     | 장기요양 1등급 | 67,770 | -      |
|                     | 장기요양 2등급 | 62,780 | 78,990 |
|                     | 장기요양 3등급 | 57,960 | 72,900 |
| 10시간이상<br>~ 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4등급 | 56,380 | 70,930 |
|                     | 장기요양 5등급 | 54,780 | 68,900 |
|                     | 인자치원 등급  | 54,780 | -      |
|                     | 장기요양 1등급 | 74,660 | -      |
|                     | 장기요양 2등급 | 69,160 | 87,020 |
|                     | 장기요양 3등급 | 63,900 | 80,380 |
|                     | 장기요양 4등급 | 62,290 | 78,340 |
|                     | 장기요양 5등급 | 60,710 | 76,340 |
|                     | 인자치원 등급  | 54,780 | 68,900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정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의 만족도 조사 및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에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건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서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요구>**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시설장 또는 기관에 직원에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1.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용자를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관 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면책범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ㄱ.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ㄴ.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ㄷ.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ㄹ.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 이라 함)” 에 필수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 배상책임보험> |             |                          |
|---------|-------------|--------------------------|
| 보험회사명   | 상품명         | 가입기간                     |
| 한화손해보험  |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 2024.11.09. ~ 2025.11.09 |